

“이 학회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일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1

大韓衛生學會誌
KOREAN. J. SANITATION
Vol. 6, No. 1, 1~6 (1991)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방향

林 堯 澤*

보건사회부

Proper Management of Sanitary Premises

Lim Yo Taek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건축기술의 진보 등에 따라 도시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고층화, 대형화하여 이의 실내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활동하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어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근대적인

대형, 고층 건물들은 인공조명, 환기조절, 금·배수시설, 승강기 등에 의하여 자연과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인간이 자연환경에 스스로 적응하여 나가기에는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이를 건축물의 위생적환경확보를 위한 관계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세계적 추세와 우리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1986. 5. 10. 공중위생법 제정시 특정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헌법 제 35

*保健社會部 公衆衛生課長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법(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의 일부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위생관리제도와 추진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대상시설 신고관리

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하며 동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생관리를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②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③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④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지하상가

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결혼예식장

⑥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⑦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⑧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와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위생상태에 관한 검사 등을 행하도록 하고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조치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의 위생관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III. 위생관리기준

이 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였고 특정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리기준의 준수를 의무화시켰다.

(1) 대상시설 중 건축물의 위생관리

건축물에 대한 위생관리는 실내 환경관리,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 화장실관리, 청소 및 소독관리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실내 환경관리기준은 표 1과 같으며 동 기준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 기준에 대한 정밀검사는 원칙적으로 각 시설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생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자가검사를 하도록 한다.

Table 1. 실내환경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부유분진	1 m ³ 당 0.15 mg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탄산가스	1,000 ppm 이하
온 도	17°C 이상 28°C 이하
상대습도	40 퍼센트이상 70 퍼센트이하
기 류	0.5 m/초이상
조 명	100 루스이상

록 하고 있으나 검사설비나 능력의 부족으로 자가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밀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검사기관으로서는 국립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정밀검사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로 확대지정할 계획중에 있다. 실내환경기준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방법을 규정한 공정시험법이 1990. 12. 29. 보건사회부고시 제90-91호로 제정 고시되었으므로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는 동시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급수관리에 있어서 공급되는 음용수는 보건사회부령 제841호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의 자체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저수탱크는 매년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배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배수설비의 정상적기능이 저하되어 오수의 노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해 시설의 보수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화장실내 또는 근처에 세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청소를 실

시하여 건물내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살충 및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상시설 중 건축물의 위생관리

충분한 수의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원의 구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수의 쓰레기집적장 및 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적관리는 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유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위생적관리업무를 위생관리용역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위생관리용역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청소, 급수 또는 배수시설의 위생적관리, 실내공기의 위생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 등 제반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수리한 후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생교육설시, 시설 및 설비기준 구비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등 제재를 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0년말 현재 전국에 신고된 위생관리용역업체수는 397개소이다.

IV.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위생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담당자는 위생관리계획의 수립, 위생관리기준 준수의 확인 및 지도,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소독이행의 확인 및 지도, 관계관청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의 확인 및 지도 등의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담당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위생사·위생시험사·환경(수질)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 ② 대학에서 수의학·약학·화학·화학공학 또는 환경공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③ 전문대학에서 화학·화학공학·위생학·위생공학 또는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 ④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 위생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V. 흡연구역 지정관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구역의 설치의 무화는 이미 선진제국의 추세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동안 WHO에서나 보건관련기관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대체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실정이므로 1990. 1. 13 공중위생법 개정시 입법조치하였으며 1990. 4. 14. 동법시행령개정 및 1990. 12. 27 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이의 시행이 확정되었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시설의 일정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미지정 시설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제 28조의 제 2항에서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그 시설안에 지정되어 있는 흡연구역외의 장소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등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금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 점차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시설로서는 공중위생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대형건축물 등 공중위생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 ①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원을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③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및 50석이상의 좌석을 가진 교통수단

④ 기타 공중위생관리상 흡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흡연구역의 지정요령에 있어서는 대상시설이 광범위하고 규모·특성 등이 다양한 현실성을 감안하여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도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렴하여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흡연구역은 당해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흡연자의 수에 상응한 면적 및 장소로 지정하되 흡연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개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흡연구역을 표시도록 하였다.

VII. 벌 칙

공중위생법상 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정목적을 실현·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하고 있다.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①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

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③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④ 위생관리담당자로서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으로서 실내환경기준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⑥ 흡연구역지정 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으로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 이의신청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과다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VII. 결 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제도가 1986. 5. 10 입법화된 후 관련법규의 수차 개정을 통하여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공정시험법 제정, 정밀검사기관 지정, 위생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과 직무범위의 법제화, 흡연구역지정관리 의무화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하겠다. 아직도 일부 건물주·점유자 등의 공중위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이용자는 공중위생관념이 부족하여 환경을 불결하게 하거나 이웃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의 증가 및 다양성에 따라 위생관리기준의 보완 내지는 새로운 기준의 설정이 요구될 것이므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해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연구사업이 계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위생관리용역업체의 기술향상, 위생관리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